

「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남 병 국

나. 제안이유
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구미시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(안 제2조, 별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
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2. 3. 1.)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의 규정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방식을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2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, 사용자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,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별표 제1호나목¹⁾과 제8호²⁾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지역적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위해 별표의 일부 수정이 필요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1) 나.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(교각 면적은 제외한다), 해저터널(「도로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)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로 한다.

2) 8.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·사용(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